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52443 과태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1. [redacted]구청장

2. [redacted]구청장

3. [redacted]구청장

4. [redacted]사업소

변 론 종 결 2017. 4. 27.

판 결 선 고 2017. 5.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2012년 1월부터 피고 [redacted]구청장이 부과한 합계 1,863,840원, 피고 [redacted]구청장이 부과한 합계 737,570원, 피고 [redacted]구청장이 부과한 합계 1,058,490원, 피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3

[redacted]사업소가 부과한 합계 1,304,190원[1]의 세금(각 가산금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B에게 부과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명의로 등록된 벤츠(BENZ) 2004년식 C 차량(차대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가단26696호로 'B은 원고로부터 2015. 9. 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들이 부과한 과태료,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가 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2016. 7. 28.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실제 운행자이자 과거에 원고의 동거인이던 B에게 강제이전등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처분은 위법하고, 이는 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 [redacted]구청장, [redacted]구청장, [redacted]구청장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 피고들의 처분 중 가장 늦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위 피고들이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자동차세

1) 을라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1,304,490원은 1,304,190원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3

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피고 [redacted]사업소의 주장

과태료 처분은 행정소송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로 다투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가산금 합계 1,304,190원의 부과기관은 [redacted]시장이므로 피고 [redacted]사업소는 피고적격도 없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redacted]구청장, [redacted]구청장, [redacted]구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1, 을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16. 8. 10. 이전에 고지서가 발송되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12. 30.에는 이미 위 각 처분일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피고 [redacted]구청장이 2016년 8월경 부과한 주민세는 이 사건 차량과 무관하게 부과된 것이고, 위 주민세 부과일을 2016. 8. 31.로 가정하여 보더라도 제소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금액에는 가산금이 포함된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3

으로 보이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제소기간이 도과한 데다가 각 처분에 포함된 가산금의 액수를 분명히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가산금을 다투는 부분의 부적법함을 별도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redacted]구청장, [redacted]구청장, [redacted]구청장을 상대로 한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 고	처분일	부과금액(원)	세 목
[redacted]구청장	2011. 12. 8.	129,670	자동차세
	2012. 6. 8.	428,100	
	2012. 12. 7.	428,100	
	2013. 6. 7.	387,340	
	2013. 12. 6.	387,340	
[redacted]구청장	2014. 6. 10.	355,060	자동차세
	2014. 12. 10.	355,060	
	2014. 8.	6,170	주민세
[redacted]구청장	2015. 6. 10.	322,790	자동차세
	2015. 12. 10.	322,790	
	2016. 6. 10.	322,790	
	2016. 8. 10.	47,360	
	2015. 8. 2016. 8.	12,340	주민세

나. 이 사건 소 중 피고 [redacted]사업소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부분의 적법여부

을라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redacted]사업소를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1,304,19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의무위반에 대하여 [redacted]시장이 부과한 과태료인 사실이 인정된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6. 22. 법률 133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 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등에 의하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3

구 자동차손배법에서 정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수원차량등록사업소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을 상대로 B에 대한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행정소송법 제3, 4조에 규정한 소송의 형태 외에 행정청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3

을 명하는 형태의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의 존재가 있음을 확인하는 의무확인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한편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하고(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참조), 구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 2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등 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동거인이던 B이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이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운행자인 B을 상대로 하여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판결은 원고와 B 사이의 사적인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차량이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 중 관할 행정청이 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를 가정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3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대원

판사 최선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3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6. 22. 법률 133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8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3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제36조(재판)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제38조(항고)

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끝>